

참고

1회용품 규제 현황 (∼22.11.23.까지 기준)

- 관련근거 : 「자원재활용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[별표1], 동법 시행규칙 [별표2],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(환경부예규), 1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) 제외대상(환경부고시)

구 분	집단급식소, 식품접객업 ¹⁾	대규모점포, 슈퍼마켓	목욕장	대규모점포 식품제조·즉석판매제조가공업	도소매업 (33㎡초과) *슈퍼마켓 제외	체육시설 (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)	금융, 증권, 광고대행, 기타교육, 영화관 등
컵 ⁷⁾	사용금지 (종이컵 제외)	-	-	-	-	-	-
접시·용기 ⁷⁾	사용금지	-	-	사용금지 ²⁾	-	-	-
나무젓가락	사용금지	-	-	-	-	-	-
이쑤시개 (전분 제외)	사용금지 ⁵⁾	-	-	-	-	-	-
수저·포크· 나이프 (합성수지재질)	사용금지	-	-	-	-	-	-
비닐식탁보 (생분해성제외)	사용금지	-	-	-	-	-	-
광고선전물 (합성수지재질)	사용금지	사용금지	-	-	사용금지	-	사용금지
면도기·칫솔	-	-	무상금지	-	-	-	-
치약·삼푸·린스	-	-	무상금지	-	-	-	-
봉투·쇼핑백 ⁶⁾	제과점 무상금지 ^{3),8)}	사용금지 ⁴⁾	-	-	무상금지 ^{4),8)}	-	-
응원용품	-	-	-	-	-	무상금지 ⁸⁾	-

- 1) 업소 외의 장소 소비 목적, 자동판매기, 세척 및 조리시설 갖춘 장례식장 제외
- 2) 합성수지제품에 한함(밀봉포장용기,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)
- 3) 종이재질, 다른제품에 묻을 우려 또는 가루 발생으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합성수지재질 봉투 제외
- 4) 종이재질, 수분이 있거나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제외
- 5)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 제외
- 6) A4규격(210mm×297mm) 또는 1ℓ이하의 종이 봉투·쇼핑백, B5규격(182mm×257mm) 또는 0.5ℓ 이하의 비닐 봉투·쇼핑백 제외
- 7) 설탕·커피·크림·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·접시·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·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
- 8)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대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무상으로 제공 가능

참고

1회용품 규제 현황 (’22.11.24.~ 기준)

- 관련근거 : 「자원재활용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[별표1], 동법 시행규칙 [별표2],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(환경부예규), 1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) 제외대상(환경부고시)

구 분	집단급식소, 식품접객업 ¹⁾	대규모 점포, 종합소매업 (편의점 등)	목욕장	대규모점포 식품제조·즉석판매 제조가공업	도소매업 (33㎡초과) *종합소매업 제외	체육시설 (운동장, 체육관, 종합체육시설)	금융, 증권, 광고대행, 기타교육, 영화관 등
컵 ⁷⁾	사용금지 (종이컵 제외)	-	-	-	-	-	-
접시·용기 ⁷⁾	사용금지	-	-	사용금지 ²⁾	-	-	-
나무젓가락	사용금지	-	-	-	-	-	-
이쑤시개 (전분 제외)	사용금지 ⁵⁾	-	-	-	-	-	-
수저·포크· 나이프 (합성수지재질)	사용금지	-	-	-	-	-	-
비닐식탁보 (생분해성제외)	사용금지	-	-	-	-	-	-
빨대·젓는막대 (합성수지재질)	사용금지	-	-	-	-	-	-
광고선전물 (합성수지재질)	사용금지	사용금지	-	-	사용금지	-	사용금지
면도기·칫솔	-	-	무상금지	-	-	-	-
차약·삼푸·린스	-	-	무상금지	-	-	-	-
봉투·쇼핑백 ⁶⁾	음식점·주점업 무상금지 ^{3),8)} / 제과점 사용금지 ³⁾	사용금지 ⁴⁾	-	-	무상금지 ^{4),8)}	-	-
응원용품	-	-	-	-	-	무상금지 (합성수지재질 사용금지)	-
우산비닐	-	사용금지	-	-	-	-	-

- 1) 업소 외의 장소 소비 목적, 자동판매기, 세척 및 조리시설 갖춘 장례식장 제외
- 2) 합성수지제품에 한함(밀봉포장용기,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)
- 3) 종이재질, 다른제품에 묻을 우려 또는 가루 발생으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, 수분이 있거나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경우 합성수지재질 봉투 제외
- 4) 종이재질, 수분이 있거나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제외
- 5)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 제외
- 6) A4규격(210mm×297mm) 또는 1ℓ이하의 종이 봉투·쇼핑백, B5규격(182mm×257mm) 또는 0.5ℓ 이하의 비닐 봉투·쇼핑백 제외
- 7) 설탕·커피·크림·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·접시·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·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
- 8)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대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무상으로 제공 가능